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32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이정헌·허성무·박홍배

박민규 • 채현일 • 박지원

김승원 · 정동영 · 임호선

김영환 • 박용갑 • 황정아

강준현 · 김우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행법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용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Online Interface)에 관한 규제를 도입하였음. 이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 건수도 동반 상승하였기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임.

그러나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중개업 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사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제는 여전 히 미비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관련 정보 확인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이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소비자"를 "소비자 등"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3조제1항 각호"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제20조제2항 중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상호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 2.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 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3.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4(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구입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4.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6.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검색·배열 순위를 조작 또는 변경하여 통 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7.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는 행위
 - 8.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계약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
 - 9. 부당하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거래 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거 래상 우월적 지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1.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2.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형태, 특성 및 빈도
- 3.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사업능력 수준 및 그 격차
- 4.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도
- 5.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화등의 수량 및 특성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4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21조의4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			
호에 관한 법률	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제1조(목적)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소비</u>				
<u>자</u> 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u>자 등</u>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				
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자의 책임) ① (생 략)	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②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u>제13</u> 조제1항 각 호			
<u>제2호</u> 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	정보의 제공) ①			
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				
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				
를 할 때에는 그 표시 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 ⑥ (생 략)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저 책임) ① (생 략)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

1. ~ 3. (현행과 같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
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
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
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
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ll 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u>다음 각 호의 사항</u>
제공하여야
<u>/11/2016</u>
<u>한다</u> .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
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
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1.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 명)·상호·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 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 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 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3. 사업 영위를 위하여 관계 법 령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등록·허가의 번호와 그 신고·등록을 받은 기관 또는 허가를 한 기관의 이름 등 신고·등록 또는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

<u><신 설></u>

③ (생 략)

-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생 략)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 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 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 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 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	필요	_한 /	사형	나으로서	τ	개통령
령	으로	정히	누는	사항		

- ③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 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u>제20조</u>
제2항 및 제3항	

③ · ④ (생 략) <신 설>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4(불공정거래행위의 금
 지) ①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
 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
 나 다른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
 는 아니 된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구입 할 의사가 없는 재화등을 구 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자 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 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3.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거 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부 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4.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5.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

위

- 6. 온라인 인터페이스의 검색· 배열 순위를 조작 또는 변경 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7.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특 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여부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8.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계약 하지 아니하고 판매촉진행사 에 사용되는 비용 등을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
- 9. 부당하게 통신판매중개의뢰 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다른 통신판매중개업자와 거 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불공정 거래행위의 세부 유형 또는 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은 통신판매중개업자 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

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 다. 이 경우 거래상 우월적 지 위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 1.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 2.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이용 형태, 특

 성 및 빈도
- 3.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 매중개의뢰자의 사업능력 수 준 및 그 격차
- 4.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온라 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의존도
- 5.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 화등의 수량 및 특성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과태료)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 설>

<신 설>

2. ~ 7. (생략)

④ ~ ⑧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자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 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1조의4제1호부터 제9 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 ~ 7. (현행과 같음)
- ④ ~ ⑧ (현행과 같음)